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안 번호	8-121
----------	-------

제출년월일 : 2019. 3.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시 재생 기본계획으로서 안산시 도시재생의 비전 및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 실행계획으로서의 위상을 갖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상위계획으로 도시 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제안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추진경위

- 착수보고 : 2018.05.04.
- 전문가 자문회의 : 2018.08.29.
- 도시재생포럼 : 2018.09.20.
- 중간보고 : 2018.11.20.
- 부서별 간담회 : 2018.12.12.~12.13.
- 주민공청회 : 2019.01.31.
-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9.03.13.

향후계획

- 시의회 의견 청취 : 2019.03.
- 경기도 승인 신청 : 2019.04.
-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승인 : 2019.05.
-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공고 및 열람 : 2019.06.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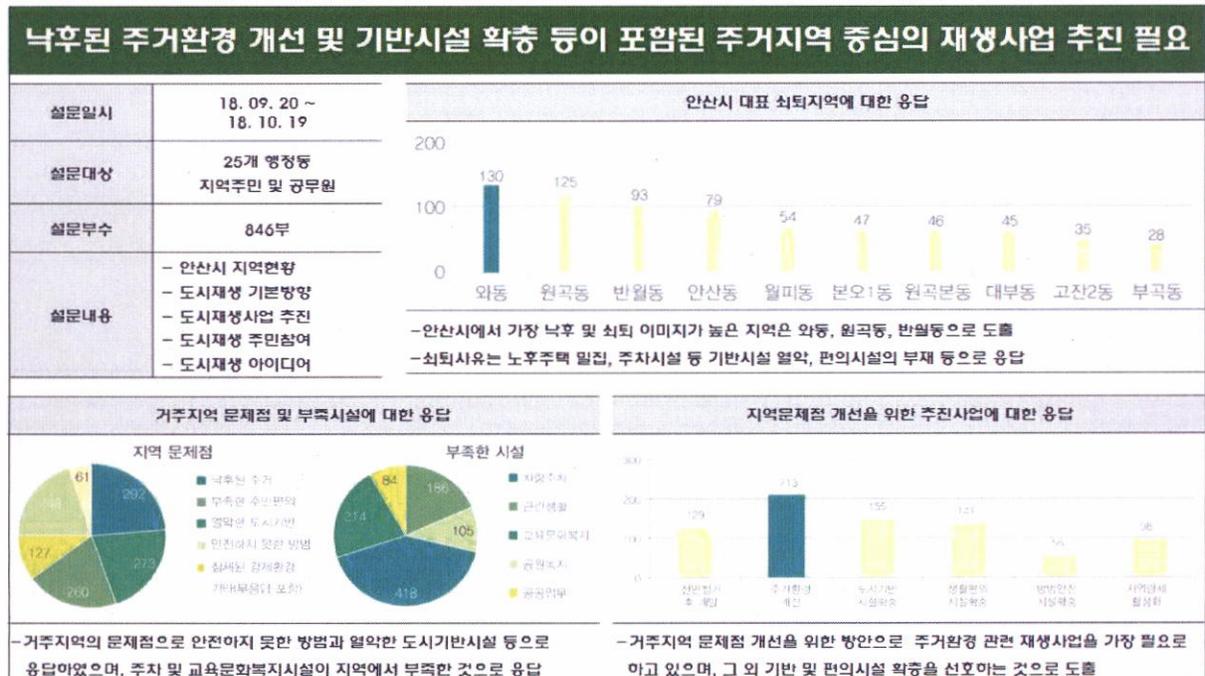
○ 계획의 목적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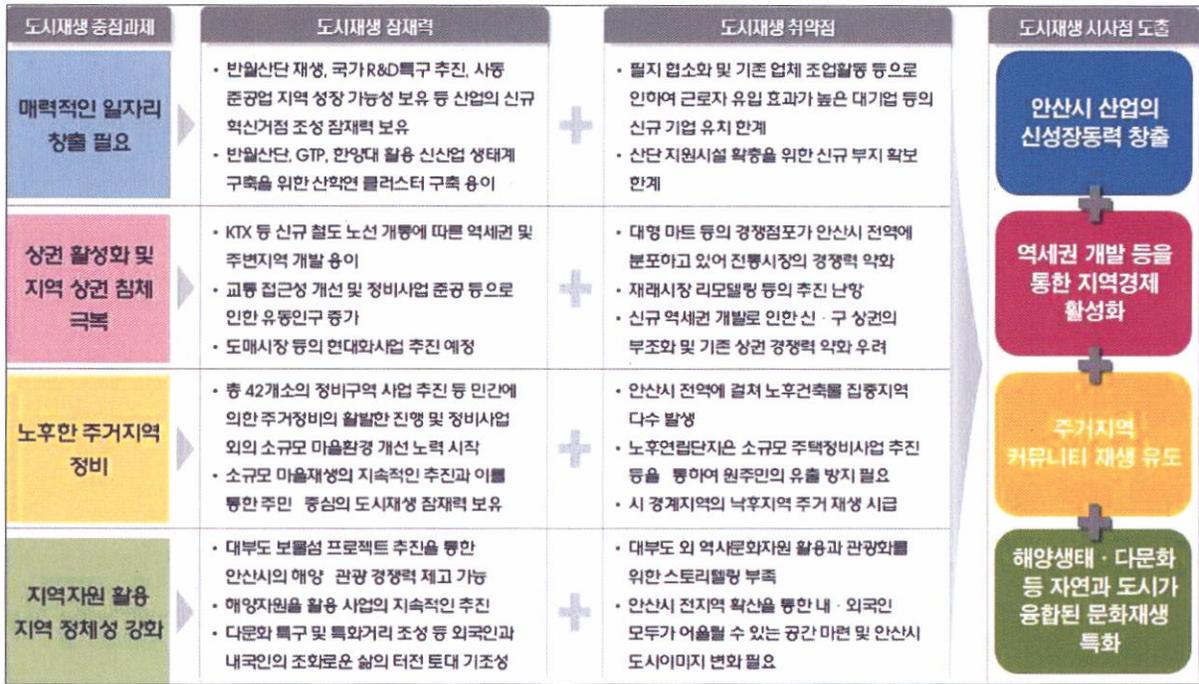
· 목적 : 도시관리의 변화에 맞추어 도시쇠퇴와 도시공간 구조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정책 추진

· 범위

- 공간적 범위 : 안산시 전지역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8년 / 목표연도 202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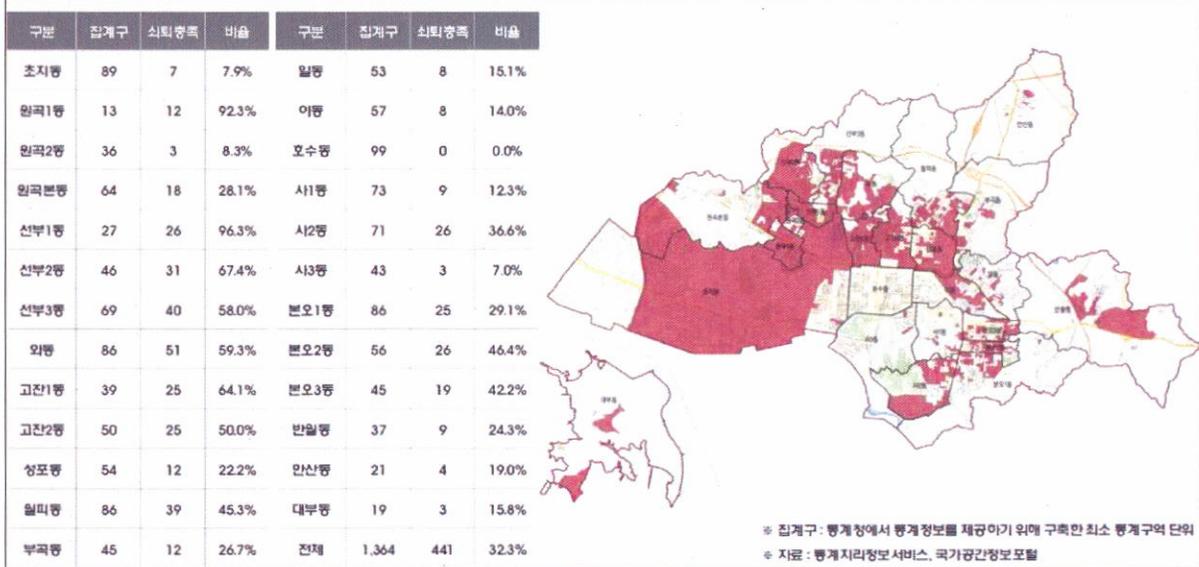
○ 물리적·사회적·문화적 여건 분석





○ 법적 쇠퇴진단

- 법적 쇠퇴요건 충족 집계구는 안산시 집계구 1,364개 중 441개(32.3%)로 도출
- 쇠퇴 집계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선부1동과 원곡1동으로 도출



○ 활성화 후보지 검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경제기반형 2개소, 근린재생형 8개소 등 총 10개소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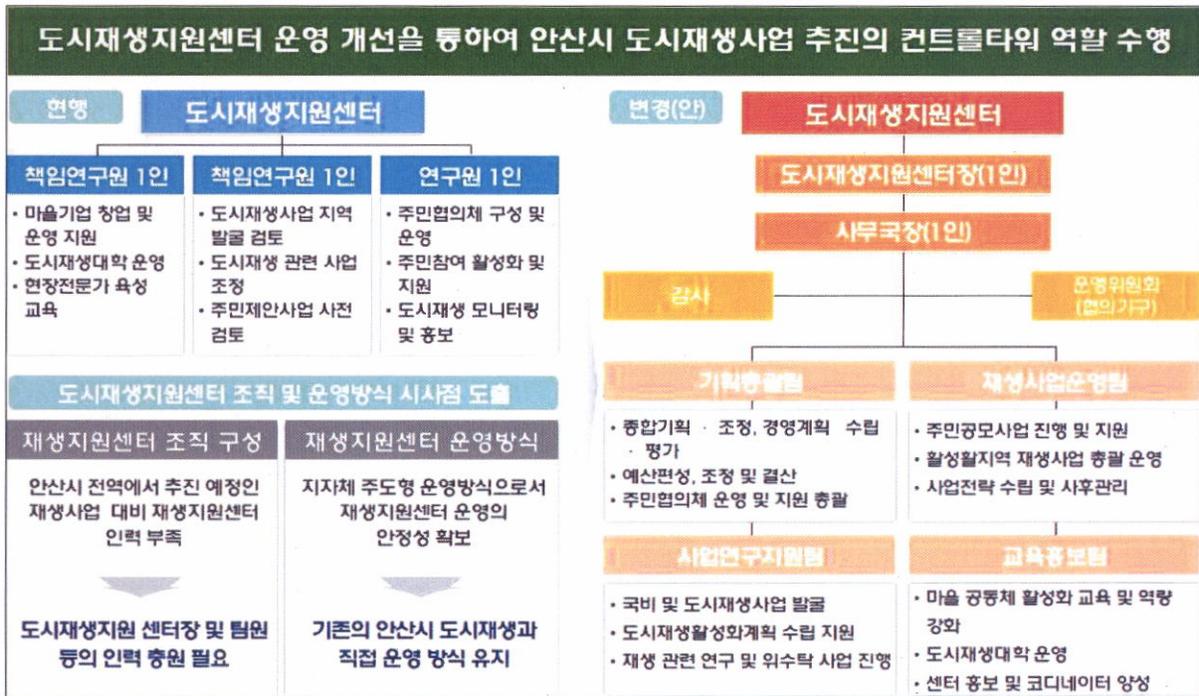
도시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일반형)		
사이동 준공업단지 일원	초지동 원시역 일원	대부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선부2동 제1종합시장 일원	본오2동 신안프라자 일원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월피동 성포중학교 일원	와동 화랑초등학교 일원	반월동 주민센터 일원
중앙동 중앙역 일원	원곡동 - 다문화특구 일원			

○ 도시재생 전담조직 구성 운영방안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개편 및 확충하여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거버넌스 기반 구축

현행	도시재생과	변경(안)	도시재생과
도시개발	도시재생 (5인)	재생정책 및 기획	재생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도시재생 조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이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 관련 계획 총괄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안산시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사업 운영 및 지원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추진 주민공모사업 추진 및 검토 사업대상지 주민협의체 운영
전담조직 개편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재생지원	마을안정기
재생업무 특화 필요 도시재생 관련성이 낮은 조직의 혼재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 도시재생 관련 업무 및 조직의 독립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 사업추진 재원 조달 및 관리 조례 운용 및 교육, 홍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별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관리 마을 공동체 만들기 계획 수립 및 사업 관리
전문인력 부족 안산시 도시재생 업무 총괄 전담조직 역할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기획 / 사업 / 지원 등의 업무 특화 추진		필요시 사업추진을 위한 T/F 구성 재생정책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안산시 도시재생추진단			
주민 소통 필요 주민 주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소통 전문 인력 필요 → 주민 소통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무 및 조직 확대		일자리정책과 (경제 및 일자리 분야)	복지정책과 (주거복지 분야)
		주책과 (주택정비·관리 분야)	자치행정과 (주민공공제 분야)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분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분야)

○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운영방안



< 붙임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도시환경위원회 의견서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의견을 제시함.

-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존 재건축 대상 단지와 추진 근거 법령 등이 달라 별도로 검토되고 있는 상태로, 안산시 전체에 대한 효율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 단지의 재생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조직 활성화를 통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주민주도형 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과 예산의 적극적인 투자를 검토하기 바람.